

N Wallet 서비스 가맹점 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 이라 합니다)과 “은행”이 제공하는 N Wallet 결제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)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“N Wallet”이라 함은, “은행” 또는 “은행”과 제휴한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(이하 “App”이라 합니다) 또는 웹 사이트에서 금융기관의 계좌 등과 연계하여 개인간 송금, 결제, 충전, 환불, 보내요, 카드, 쿠폰, 상품권, 멤버십, 스탬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“은행”이 운영하는 선불충전형 전자지갑(계정)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② “서비스”란 “가맹점”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금을 “회원”이 “가맹점”의 “단말기”에서 “N Wallet”으로 “결제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③ “가맹점”이란 “N Wallet” “결제”가 가능한 “단말기”를 설치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후 “은행”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자의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.
- ④ “단말기”란 “가맹점”이 “서비스”를 제공받기 위하여 설치한 유·무선단말기 등을 말합니다.
- ⑤ “회원”이란 “N Wallet”의 약관 동의 및 가입절차를 이행한 후 “가맹점”에서 “서비스”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⑥ “제휴사”란 “은행”과 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⑦ “입금계좌”란 “N Wallet”으로 “결제”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입금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.
- ⑧ “가맹점 수수료”란, “회원”이 “가맹점”에서 “N Wallet”으로 “결제”할 경우, “서비스”에 대한 대가로 “가맹점”이 “은행”에 지급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말합니다.
- ⑨ “정산대금”이란, “회원”이 “N Wallet”으로 결제할 경우, “은행”이 “가맹점”에 지급하는 금원으로 결제금액에서 “가맹점 수수료”를 차감한 나머지 금원을 말합니다.
- ⑩ “결제”란, “회원”이 “가맹점”에서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⑪ “거래승인”이란, “회원”의 정상적인 “결제” 거래에 대해 “은행”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 3 조 (“입금계좌”의 등록 및 변경)

- ① “가맹점”은 “은행”에 “입금계좌”의 사본을 제출하고 “은행”은 해당 “입금계좌”로 “정산 대금”을 입금합니다.
- ② “가맹점”은 제 1 항의 “입금계좌”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“은행”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제 4 조 (가맹점의 준수사항)

- ① “가맹점”은 “N Wallet”이 “회원”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단,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“은행”과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.
- ② “가맹점”은 “서비스”를 이용하는 “회원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“회원”을 차별 취급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③ “가맹점”은 “서비스”를 이용하는 “회원”에게 “가맹점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전가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④ “가맹점”은 “회원”이 “서비스”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“서비스”의 이용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.
- ⑤ “가맹점”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“N Wallet” 거래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⑥ “가맹점”은 타 “가맹점” 명의로 “N Wallet” 거래를 하거나 “가맹점”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⑦ “가맹점”은 “회원” 또는 타 “가맹점” 등의 “N Wallet” “결제”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.
- ⑧ “가맹점”은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“회원”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하여 “회원”의 동의를 얻지 않고, 타인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⑨ “가맹점”은 “서비스”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⑩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은 거래품목과 거래방식에 따라 “은행”과 별도의 전자상거래 및 결제대행(PC)서비스 가맹점 특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제 5 조 (은행의 준수사항)

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“거래승인”을 받은 정상적인 “N Wallet” 거래에 대해서는 “가맹점”의 “입금계좌”에 “정산대금”을 입금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대금을 지급합니다. 다만, “은행”은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한 거래라고 인정할만



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 6 조 (거래방법)

- ① “가맹점”은 “회원”이 유효한 “N Wallet”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“단말기” 또는 “은행”이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“거래승인”을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② “가맹점”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시 “단말기” 또는 “은행”이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“거래승인”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③ “가맹점”은 제1항에 의한 “거래승인”이 완료된 경우 결제수단, 거래고유번호, 가맹점 명, 가맹점관리자번호, 사업자번호, 거래일자 등 “은행”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된 영수증(매출전표)을 작성하여 “회원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- ④ “가맹점”이 영수증(매출전표)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거래 금액에 한하며,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,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.
- ⑤ “가맹점”은 1매의 영수증(매출전표)으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영수증(매출전표)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⑥ 영수증(매출전표)상의 금액 또는 제3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“가맹점”은 즉시 해당 영수증(매출전표)을 폐기하고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, 무효, 반품,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영수증(매출전표)을 작성하고 원래의 영수증(매출전표)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 7 조 (거래의 취소)

- ① 가맹점은 “회원”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의 취소, 반품 등의 사유로 “N Wallet”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“단말기”에 의한 거래취소 등의 방법으로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“은행”이 “정산대금”을 입금하기 전 제1항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, 은행은 “정산대금”을 “가맹점”에게 지급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“회원”의 “N Wallet”에 즉시 지급합니다.
- ③ “은행”이 “정산대금”을 입금한 후 제 1항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, 은행은 해당 “정산대금”을 입금 예정 “정산대금”에서 차감하며, 결제대금을 “회원”의 “N Wallet”에 즉시 지급합니다.
- ④ 입금 예정 “정산대금”이 취소된 거래의 “정산대금”보다 부족한 경우 “가맹점”이 부족 금액을 “은행”에 입금하는 등에 의해 부족이 해소된 이후, “은행”은 결제대금을 “회원”의 “N Wallet”으로 지급합니다.
- ⑤ “가맹점”은 “결제” 후 90일 이내에 취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취소요청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취소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가맹점”은 “회원”이 기 “결제”한 금액을 “회원”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.

제 8 조 (가맹점수수료 및 정산)

- ① “가맹점”은 “은행”과의 별도 협의에 따라 정한 “가맹점수수료”를 “은행”에게 지급합니다.
- ②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과 협의한 대금지급주기에 따라 “가맹점”이 지정한 “입금계좌”로 “정산대금”을 입금합니다. 다만, 입금계좌 오류, 입금제한 등 “입금계좌”에 입금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,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하며,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“은행”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와 “은행”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.
- ③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의 신용상태 혹은 시장환경에 따라 “가맹점”과의 협의에 의해 “가맹점 수수료”, “정산대금”의 지급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④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이 제4조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“정산대금” 지급의 정지, 가맹점 계약의 해지 및 1년 이상의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지급 정지된 “정산대금” 중 “은행” 또는 제 3자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잔액의 지급은 “은행” 또는 제 3자의 손해 범위의 확정으로 추정 또는 간주되지 아니합니다.
- ⑤ 제4항에 의한 “정산대금” 지급 보류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, 은행은 그 보류 “정산대금”을 지급합니다.

제 9 조 (“N Wallet”의 거래한도)

- ①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에 대하여 1회 또는 1일의 “N Wallet” 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“N Wallet” 거래한도는 “가맹점”을 이용하는 “회원”의 민원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10 조(가맹점 비치물 및 표시물)

- ① “가맹점”은 본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“은행”의 사전 동의를 받은 각종 표시물, 양식 및 제 장표(이하 “표지물 등”)이라고 합니다.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“가맹점”은 “은행”으로부터 표시물 등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“가맹점”은 “은행”이 정하는 표시물 등을 “가맹점” 내외에 “회원”이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.



- ③ 제1항에 의거 “은행”의 동의를 받은 표지물 등은 관련 법령의 제·개정, 감독기관의 처분, “은행”의 정책변경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가맹점”은 즉시 표지물 등을 교체하거나, 표지물 등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④ “가맹점”은 본 계약의 기간만료, 해지 등의 사유로 “서비스”가 종료된 경우 표지물 등을 즉시 제거하고, 대여받은 표지물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.

제 11 조(도난, 분실 또는 위·변조된 N Wallet 거래에 대한 책임)

- ① “가맹점”은 도난, 분실 또는 위·변조된 “N Wallet”에 의한 거래가 “가맹점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또는 손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“가맹점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 - 1. “N Wallet”의 실제 사용자가 “N Wallet” “회원” 본인이 아님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한 경우
 - 2. “가맹점”이 도난, 분실 또는 위·변조된 “N Wallet”과 관련된 거래에 공모, 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
 - 3. 기타 “가맹점”의 현저한 부주의에 의해 도난, 분실 또는 위·변조된 “N Wallet”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한 경우

제 12 조(“회원”과의 분쟁)

- ① “N Wallet”에 의해 “결제”된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분쟁은 “가맹점”과 “회원”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② “N Wallet”에 의해 “결제”된 거래에 대하여 “가맹점”과 “회원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“가맹점”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“은행”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제 13 조(변경통지)

- ① “가맹점”은 “은행”에 신고한 가맹점 명,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“은행”에 서면 등 “은행”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 사항에 변경이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“가맹점”이 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“은행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“가맹점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“은행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
- ② “가맹점”이 제1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“은행”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“가맹점”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 14 조(계약의 해지 등)

- ①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서면 통지에 의해 사유 해소시까지 “가맹점”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“가맹점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- 1.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
 - 2. “가맹점”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“가맹점”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4. “가맹점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“은행” 또는 “회원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- 5. “가맹점”이 부도, 파산, 회생절차신청, 폐업신고,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6. “가맹점”을 이용하는 “회원”으로부터 민원발생 정도가 심각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“은행”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7. “가맹점”이 관계법령, 행정기관의 지도 등을 위반한 경우
 - 8. “가맹점”이 “회원”에게 “가맹점 수수료”를 전가한 경우
- ② “가맹점”이 해지를 원할 경우, “가맹점”은 “은행”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15 조 (양도금지 등)

“가맹점”은 “가맹점”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, “가맹점”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, 전매,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 16 조 (약관 위반시의 책임)

- ① “가맹점”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“은행” 또는 “회원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② “가맹점”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“회원”도 “N Wallet”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여 “가맹점” 또는 “회원”에게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“은행”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

제 17 조 (효력의 발생 및 유효기한)

- ① 본 약관은 “가맹점”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“은행”이 “가맹점”의 가입신청을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자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, “은행”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“가맹점”에 계약만료일의 도래 사실을 통지합니다.
- ② 제1항의 통지에는 “가맹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맹점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.
- ③ “가맹점”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“연장을 원하지 않음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.

제 18 조 (신용정보 제공)

- ① “은행”은 “가맹점”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,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“가맹점”은 이에 동의합니다.
- ② “가맹점”과 “회원”간 “N Wallet”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“은행”은 “회원”의 요청과 “가맹점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“가맹점”의 정보를 “회원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 19 조 (정보보호)

- ① “가맹점”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“은행”의 각종 업무상의 기밀 및 회원 정보를 “은행”이나 “회원”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가맹점 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“가맹점”이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② 본 조 제1항은 본 가맹점 계약이 해지, 기간만료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.

제 20 조 (약관의 해석)

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 21 조 (관할법원)

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